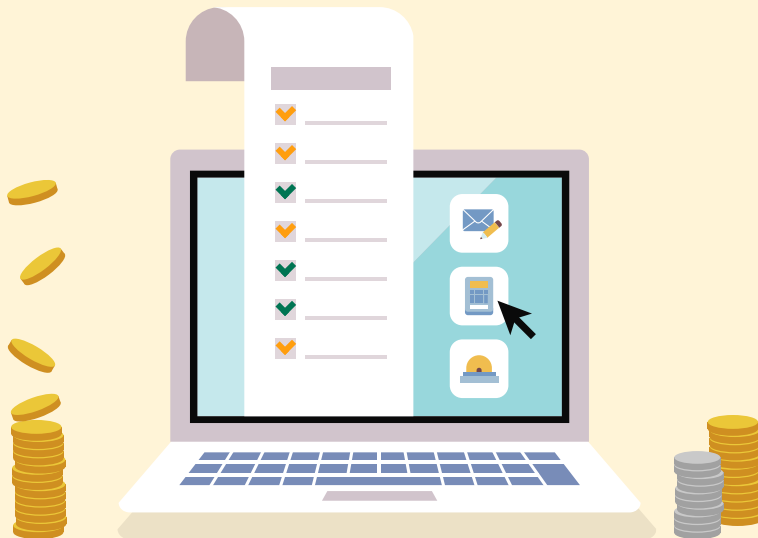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회계컨설팅

Q & A

2021.12.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Q&A Contents

그룹홈 일반 03

그룹홈 회계서류 및 통장관리 09

그룹홈 예산 및 결산, 세금 등 14

후원금품 33

보조금 지원, 자가격리지원금 등 기타사항 44

1

그룹홈 일반



Q & A



01. 서울시 단일임금제 적용받고 있지 않는데도 개인 운영 그룹홈이 법인과 동일하게 회계관리를 해야 하나요?

A

개인 운영 그룹홈도 회계관련 처리방법은 법인 운영 그룹홈과 동일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울시 단일임금제 미적용 대상일 경우, 인건비 지급기준이 다르며, 그에 따른 4대보험과 퇴직금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인 시설의 경우, 법인 회계감사를 별도 실시하는 등 자체적인 운영체계가 있으면 그에 준하지만, 큰 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관련 법적 근거

아동복지시설의 정의

: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아동복지시설 운영 근거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50조(아동복지시설 설치), 제51조(휴·폐업),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종사자), 제55조(교육훈련), 제56조(제57조제59조(비용보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급여의 기준), 제7조(급여의 종류),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관련 조항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아동복지법 제52조)

: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97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 추가('04.1월)



02. 그룹홈 운영주체가 궁금합니다. 운영주체에 따라 서류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그룹홈 운영주체는 크게 법인과 개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2021년 11월말 기준, 법인 그룹홈이 54개소, 개인 그룹홈이 12개소(법인 전환 중 그룹홈 포함)입니다. 운영주체에 따라 서류가 다른 것은 법인 내 자체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민법,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각각의 근거법에 따라 의무조항이 있으며 이행해야 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그룹홈 신규설립을 준비하신다면 각각의 운영주체에 따른 차이를 미리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운영주체별 법적 기본근거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장 협동조합

사단법인 : 민법 제2절 설립

재단법인 : 민법 제2절 설립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장 사회복지법인



03.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룹홈도 법인에 해당되나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룹홈은 법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로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의 법인 설립 후 그 소속으로 그룹홈을 설립한다면 운영주체는 법인에 해당됩니다.



04. 현재 그룹홈에서 어떤 회계프로그램을 쓰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인 '사통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매뉴얼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 매뉴얼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05.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관련 고유번호증상 명칭은 반드시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증에 표시된 운영자 성명 또는 운영법인 명칭과 동일해야 한다고 하고, '21년 7월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무에 필요한 준비와 절차 과정을 알려주세요.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는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나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는 해당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관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위의 내용을 시행하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내(안) 주요개정 중 해당 내용

① 고유번호증, 고용관계 및 보조금 지급 등 관련사항

구분	2020년	2021년(안)	비고
① 고유번호증 발급	마.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 (안내사항)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적용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기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있으며, 2021.7. 이후 실제 적용되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표기 방법은 지침 예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새무행정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각 시설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도록 할 것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는 사업장이 다수일 경우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접수내역을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법인 산하 시설이라 하더라도 법인등록번호가 아닌 시설별로 별도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등록해야 함 ●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상 명의는 반드시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증(인가증, 허가증 포함, 이하 같음)에 표시된 운영자 성명 또는 운영법인 명칭과 동일해야 함 ● 시설을 수탁 받은 경우도 반드시 수탁 받은 법인의 명의로 해당 시설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수탁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수탁 받은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토록 조건을 부과할 것 ● 다만 위의 사항은 현재 시설관련 고용현황을 고려하여, '21년 6월까지 경과기간을 두어 시장·경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21년 7월부터 적용할 것 ● 향후 시설 설치신고증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 지양 < 참고 : 법인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내용생략)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 126)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바람	마. 사회복지시설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별도 발급 <u><삭> 제></u>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시설별로 별도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할 것 ※ 법인이 설치·운영수탁 포함하는 시설의 경우 "법인명(단체명)"에 법인명칭을 기재하거나 법인명칭과 시설명칭을 밝기하는 형태 등으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세무관서에 신청할 수 있음(관고사항)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 <u>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바람</u>	p.12 ~17 ※고유번호증 변경 예시 삭제



06.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주체 전환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경영공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경영공시 대상은 운영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이 하여야 합니다. 만약 1년이 안되었다면 해당기간에 대한 내용만 공시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 경영공시를 하지 않으면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7.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시기와 내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A

경영공시 시기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정관에서 정한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다음해 4월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경영공시 방법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처 :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01, p.10.

경영공시 진행절차



공시방법

- ① 협동조합 홍보포털 www.coop.go.kr 접속
- ② 이사장 또는 조합원 계정 로그인(최초 입력 시 별도 회원가입 필요)
- ③ 마이페이지 > 경영공시 관리 > 경영공시 작성

공시내용

정관, 규약, 규정(규약과 규정이 있는 경우 모두 공시)
 사업결산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제22호 서식)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결과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제24호 서식 참고)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결과보고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해당 경우만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작성)

※ 경영공시 자료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법인 결산 재무제표와 사업계획 등을 바탕으로 작성 및 등록

2

그룹홈 회계서류 및 통장관리

Q & A



08. 현금출납부 / 총계정원장은 별도로 편철해야 할까요?

A

사회복지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회계 장부이며 별도 편철을 권합니다.

현금출납부는 전월누계를 시작으로 일자순으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것으로 계정 과목은 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총계정원장은 전월누계를 시작으로 일자순으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것으로 계정 과목은 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그 외 재산(자산)대장, 비품관리대장을 작성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 이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봅니다.(「재무·회계 규칙」 제24조)

현금출납부 서식 예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현금출납부(시설용)

200 년 월

연월일	계정과목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전월누계) · · ·			
		(월계)			
		(누계)			

총계정원장 서식 예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지 제25호의2서식]

총 계 정 원 장(시설용)

계정명	연월일	적요	수입	지출	차인잔액



09. 통장관리 팁 좀 알려주세요!

A

법인과 그룹홈 통장은 반드시 구분하여야 하며, 통장 목록을 작성(계좌번호, 사용 용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번호 등을 기입)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사용이 종료된 통장은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예) 후원금, 보조금 등 용도에 따라 구분

통장목록 예시

연번	은행명	계좌번호	사용용도	체크카드 번호	비고
1	우리	1000-333-777777	보조금	335-12-1111	
2	국민	108-3334-777777	후원금	111-334-7477	

10. 예수금 통장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2020년 7월부터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기 시작함
- 4대보험 요율을 11%로 일괄산출 후 실제 보험료 발생액에 따라 정산, 지급하고 있음. 해당금액을 예수금 통장으로 이체하여 관리함
- 실제 보험료 발생액보다 남는 잔액이 많고 기존의 잔액과 혼재돼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함



A

2020년 7월부터 단일임금제로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만큼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정산한 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도록 예수금 통장에 이체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년단위로 정산하여 익년도 2분기에 부과하기 때문에 자치구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정산하고 남은 잔액은 자치구에 반납해야 하며, 근로자부담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11. 구청 지도점검에서 소모품대장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소모품은 주로 아이들이 쓰는 물건인데 물건 가져가면서 일일이 적으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장부는 어디까지 정리해야 하는 건가요?



A

소모품이란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한 단기 사용용품을 말하며, 수불 관리가 필요한 소모품은 실험 실습 및 연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고가 약품 또는 시약 등을 말합니다.

아동의 학용품, 치약, 칫솔, 비누와 같은 생활용품, 복사지 등 일반 사무용 비품 등은 기록 관리가 불필요한 물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2018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매뉴얼, p.75, 2009. 5. 8. 조달청 질의 회신)

2021. 9. 30 시행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4조에 근거, 장부는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외 3. 총계정원장 보조부(2012. 8. 7), 6. 소모품대장(2009. 2. 5), 7·12호(7. 유가증권수급대장, 8. 신탁대장, 9. 차입금대장, 10. 대부금대장, 11. 미수금대장, 12. 미불금대장)(1998. 1. 7)는 각각 해당일자에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만 작성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이들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치구 담당공무원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24조
(장부의 종류)**

1. 현금출납부	7. 삭제 <1998. 1. 7.>
2. 총계정원장	8. 삭제 <1998. 1. 7.>
3. 삭제 <2012. 8. 7.>	9. 삭제 <1998. 1. 7.>
4. 재산대장	10. 삭제 <1998. 1. 7.>
5. 비품관리대장	11. 삭제 <1998. 1. 7.>
6. 삭제 <2009. 2. 5.>	12. 삭제 <1998. 1. 7.>



12.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세입과목의 '잡수입 - 잡수입 - 불용품매각대'로 수입처리합니다. 다만, 구입할 때의 재원이 보조금이었다면 당시 보조금 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통상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의 매각 시 내구연한이 남아 있으면 매각대금을 보조기관에 반납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때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이 대부분이지만 반드시 구청의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그룹홈 예산 및
결산, 세금 등

Q & A



13. 그룹홈 예산편성 시, 관항목에 대한 구분방법을 알려주세요.

A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합니다. 예산과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별표 3] <개정 2012.8.7.>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입소자부담금 수입	11	입소비용수입	111	○○비용수입	입소자로부터 받는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예: 입소자가 제작한 물품판매 수입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2	시·도 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3	시·군·구 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4	기타 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과목						내역
관		항		목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6	요양 급여수입	61	요양 급여수입	611	장기요양 급여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07	차입금	71	차입금	7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712	기타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812	법인전입금 (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에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3	○○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 사업의 이월된 금액
10	잡수입	101	잡수입	1011	불용품매각대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10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10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사회복지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별표 4] <개정 2019.9.27.>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정근수당 포함)
				112	제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 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 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136	기타운영비	시설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과목				내역		
관	항		목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312	수용기관경비	입소자를 위한 수용비(치약·칫솔·수건구입비 등)
				313	피복비	입소자의 피복비
				314	의료비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
				315	장의비	입소자중 사망자의 장의비
				316	직업재활비	입소자의 직업훈련재료비
				317	자활사업비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318	특별급식비	입소자의 간식, 우유등 생계외의 급식제공을 위한 비용
				319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32	교육비	321	수업료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업료
				322	학용품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323	도서구입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도서구입비, 부교재비
				324	교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대중교통비
				325	급식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326	학습지원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피아노교습, 사설학원 수강 등)
				327	수학여행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비
				328	교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교복비
				329	이미용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이, 미용비
				330	기타교육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그 밖의 교육경비(학습재료 등)

과목						내역
관		항		목		
		33	○○사업비	331	의료재활 사업비	입소자(재활·물리·작업·언어·청능)치료비, 수술비용, 의수족 등 장애인 보조기기 제작수리비 또는 입소자를 위한 의료재활 프로그램 비용
				332	사회심리 재활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333	교육재활 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비
				334	직업재활 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비
				335 · ·	○○사업비 · ·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등 전문프로그램이 아닌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하계캠프,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등)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 전출금	법인회계로의 전출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지급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래금·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및 기타	81	예비비 및 기타	811	예비비	예비비
				812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Q

14. 그룹홈 아동의 비타민을 의료비로 구입하였는데 집행 부적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타민은 어느 목적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A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등은 의료비가 아니라 영양급식비에 해당합니다. 급식비 목적으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Q

15. 운영주체와 그룹홈 회계를 구분하는 근거가 있나요?

A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등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하나의 법인이 그룹홈을 여러 개소 운영할 경우, 그룹홈의 회계는 각 그룹홈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룹홈 회계 구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준함**

법인회계

: 그룹홈 운영주체(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그룹홈(시설)회계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그룹홈에 관한 회계

수익사업회계

: 운영주체인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 법인회계와 그룹홈(시설)회계 구분 출처 : 2013. 10. 감사원 지적 사항



Q

16. 예산편성 및 추경과 관련하여 후원금, 법인전입금, 예비비 등의 적정 기준은 어디까지 인가요?

A

별도의 적정기준은 없습니다. 매년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게 됩니다. 후원금과 법인전입금은 수입금에 해당하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예비비의 한도액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그룹홈은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습니다.



Q

17. 구청에서 예산총칙을 내라고 하는데 예산총칙이 뭔가요? 혹시 샘플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예산 총칙의 내용(종류)이나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흔히 예시로 제시되는 형식대로 엮매일 필요는 없으며,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 등의 의결을 받으면 됩니다. 주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사항이 있는 것만 명시하시면 됩니다.

- 차입금의 한도액, 특정목적사업 예산의 적립, 준비금 등에 관한 사항
- 정부 보조금, 기능보강사업비 등의 집행에 필요한 내부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내용 등

예산총칙 예시

제1조

○○○ 그룹홈 수입·지출 예산의 총액은 ○○,○○○천원으로 한다.

제2조

예산의 향간 전용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목간 전용은 원장의 승인에 의해 행할 수 있다.

제3조

원장은 정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정부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경우와 공공요금, 금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규모를 변경시킬 수 있다.

제4조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우선 집행 후 사후의결로 할 수 있다.

제5조

원장은 예산승인 후 회계연도 중 예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부수입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별도의 예산 승인 없이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수행 후에는 관할 관청(구청 또는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총칙 제출 근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1조

①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 한다)은 제2호, 제5호(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이하 생략)

복식회계	단식회계	소규모시설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명세서 ③ 추정대차대조표 ④ 추정수지계산서 ⑤ 임·직원 보수일람표 ⑥ 해당예산을 보고받은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법인의 경우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명세서 ⑤ 임·직원 보수일람표 ⑥ 해당예산을 보고받은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법인의 경우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세입·세출명세서 ⑥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법인의 경우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예산 제출 시 1년간 진행된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요약본 사본 1부를 사·군·구에 제출함⁶⁾



Q

1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내년도 인건비 기준표가 미정인 상태에서는 금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표가 확정이 되면 그 기준에 맞춰 인건비 예산안을 조정하면 됩니다.



Q

19.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결산금액과 1원이라도 차액이 발생한다면 연말에 결산하면서 맞추면 되나요?

A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부족한 세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회계연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행위가 일어난다면 계획적으로 예산 운영이 되지 않은 것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추경 및 전용절차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출하여야 하며 예산금액의 범위 내에서 결산이 되어야 합니다.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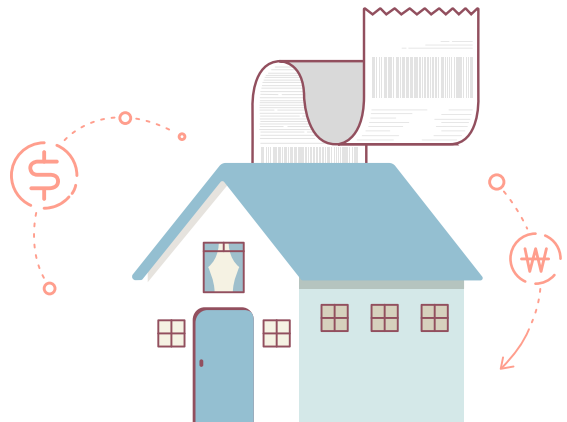
20. 그룹홈 지출을 12월 말까지 끝내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A

그룹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인 '1.1~12.31'에 따릅니다. 따라서, 모든 지출은 '12.31'을 기준으로 마감합니다. 다만, 종사자의 시간외 수당의 경우, 12월의 시간외 수당을 익년도 1월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2020.12)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시기가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지급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12월은 당월지급을 권고'라 되어 있으나 그룹홈은 24시간 아동을 돌보는 생활시설로 종사자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익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일을 미리 예측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익년도 1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세액과 4대보험료의 경우 익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내 지출을 예외로 합니다. 이는 예수금에서 지출되는 사항으로 예산서나 결산서에 별도 기입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출을 마감하여야 하며, 그 이후 이루어지는 지출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21. 구청에서 지도점검 나와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품의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품의서가 뭔가요? 양식이 있나요?

A

예산을 집행하기 전, 예산계획에 대해 상사에게 미리 서류로 결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품의서는 별도의 서식이 없고 금액과 집행일자, 산출내역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품의서' 서식이 있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는 '품의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그룹홈마다 내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고 품의서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룹홈 등 사회복지시설 중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 품의서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등) / 제세공과금 / 공공요금 / 인건비 / 국내여비 / 일상경비 교부

품의서 작성 예시

000 그룹홈

수신 : 내부결재(품의)
제목 : 0000 구입비 지급

0000과 관련하여 아래와같이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지출건명 : 0000 구입비 지급
2. 품목 및 수량 :
3. 지급금액 : 금 00,000원(금0만0천원)
4. 구입업체
- 상호명 : (대표자명 : ☎ 02-)
- 주 소 : 서울시 구 길
5. 지출방법 : 그룹홈 체크카드 결제
6. 예산과목 : 보조금(관)-운영비(항)-소모품비(목)

담당자 원장
시행 문서번호 기재(날짜 기재)
그룹홈 주소 기재 / 홈페이지 주소 기재(있는 경우)
그룹홈 전화번호 기재 / 팩스번호 기재 / 대표이메일주소 기재



22. 원천세 신고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A

종사자에게 급여를 주거나 강사에게 강사비를 일정금액 이상 지급할 때 세금을 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 제한 금액을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과 함께 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납부하셔도 되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납부하셔도 됩니다. 세무사사무실을 통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연간 세무일정 및 신고내용

1월	7일	기부금영수증 신고(개인-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0일	전월 원천세 신고 납부 ※ 반기납부 (전년도 하반기 7월~12월분) 신고 납부
	25일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세금계산서 수취법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2월	11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계산서 교부, 수취법인)
	28일	지급명세서(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제출 전년도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마무리(급여 반영, 지급)

3월	10일	원천세 신고 납부 지급명세서(근로·사업·퇴직 소득 등) 제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
	15일	고용산재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
	31일	법인세 신고·납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보고서 제출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상증령 제43조 제6항) ※ 자산총액 5억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해당(제외대상 확인 상증령 제43조 제2항)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보고서(상증법 제50조 제3항) ※ 총자산가액 100억 이상 공익법인 해당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기부금단체
4월	30일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상증령 제3조의3)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법인세 분납
5월	31일	개인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외에 사업, 기타소득 등 타소득자 합산신고)
6월	30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법 제112조의2 ③)
7월	10일	원천세(반기신고자는 1~6월분 및 연말정산분 포함 신고) 신고 납부
	25일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 납부(과세사업 영위 법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매입세금계산서 수취법인)
	31일	2/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0월	31일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기타사항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보고 : 지정일부터 매 2년마다 3월 31일



Q

23.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하면 80%, 100%, 120%의 표가 나오는데 차이점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A

매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룹홈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로 신고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액 차이가 발생하지만, 다음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합니다. 이때 많이 납부한 세액은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Q

24. 과거에는 원천징수 신고를 반기로 했고, 2019년의 경우도 소득세를 연말정산(2월)하면서 수납했는데, 지금은 매달 소득세와 지방세를 공제하여 ‘예수금’ 통장으로 이체하고 수납하라고 합니다. ‘예수금’ 통장은 ‘4대 사회보험’이나 ‘퇴직적립’통장과 함께 사용해도 되는지요?

A

원천징수 세액과 4대보험료와 같이 임시로 보관하는 성격의 자금을 예수금이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과 4대보험료는 예수금 통장에 관리하고 퇴직적립금은 별도의 통장에 관리하셔야 합니다.



25. 남편이 학교 교사인 경우, 종사자는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배우자와 종사자 두명 중 한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준합니다. 종사자의 배우자가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직원,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한 국립학교의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면 종사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족수당 지급 예외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⑤항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Q

26. 퇴직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꼭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A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은 구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퇴직적립금은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셔야 하며, 반드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체계적인 예산관리와 퇴직금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권장합니다.

가입은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에 가입하는 방법과 30인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으며 가입 전 금융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자세한 문의 후 그룹홈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27. 종사자가 1년이 안되어 퇴사를 해서 퇴직적립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다. 지급하지 않은 퇴직적립금은 다음달에 바로 반납해야 하는지, 언제 반납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A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보조금 집행 잔액은 다음 해 초에 한꺼번에 반납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자치구 중 간혹 즉시 반납하라는 구가 있어 담당공무원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중도퇴사로 인하여 퇴직적립금이 남았다고 하여 타 직원의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자치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셔야 합니다.



Q

28.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이들이 항상 집에 있고 세끼 모두 그룹홈에서 해결하고 있어 너무 힘들 때면 도와주시는 분이 오십니다. 이런 경우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올 경우 퇴직금을 줘야 한단데 맞나요?

A

퇴직급여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매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의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Q

29. 카드포인트의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카드의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는 다시 시설 운영경비로 사용하시면 되며, 개인 및 사적용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카드 포인트 및
마일리지 관련
사용근거 :
2021년 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p47)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 (개인적으로 사용금지)

* 보조금 전용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30.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을 붙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수증의 글씨가 흐릿해져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원본을 복사해서 사본을 첨부해도 되나요?**



지출결의서에 첨부되는 영수증은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처럼 햇빛을 받거나 오래되면 글씨가 흐려지는 영수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을 복사하고 그 옆에 원본영수증을 같이 붙여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31. 신규입사하여 재물조사를 하였는데 비품목록과 그룹홈 내 물건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증감된 물품의 원인을 파악하여 목록을 정리하면 됩니다. 목록에는 없는데 물건이 있다면 신규 취득품으로 추가 기재하고, 목록에는 있는데 물품이 없다면 손망실 처리 또는 분실책임에 따라 정리합니다. 기록 착오, 누락 등 사무상 착오가 명백한 것은 그 해당내용을 정정하면 됩니다.



32. 예산이 없어 전자제품(냉장고)을 재활용매장에서 중고로 구입하였는데 이것도 비품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중고전자제품이라도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이고 소모성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품목록에 넣습니다. 비고란에 중고물품을 명시하는 것을 권합니다.

4

후원금품



Q & A



33. '지정후원금'이나 '비지정후원금'이나 차년도 이월에는 '후원금'으로 표기가 되는데 정확히 사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은 사용용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후원금의 잔액이 발생하여 차년도에 이월시킬 경우,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을 구분하여 이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후원금은 지정과 비지정을 관항목에서는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역'에 표기하시면 됩니다. (관>항>목) 내역)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그룹홈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때 50%의 비율의 기준은 후원금 총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 시 2012년도 말 기준, 비지정후원금 모집액 1,000천원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700천원일 경우 간접비 사용금액 한도는?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금액은 지출금액 기준 700천원에 대한 50%인 350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12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13년도 세입예산과목 중 전년도 이월금(후원금)으로 처리함.

후원금은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혹 직원 회식비로 사용할 수 있냐는 문의가 있는데 회식비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 :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p.163~168)



**34. 법인화를 해야 단일임금제 적용이 된다고 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룹홈 후원금을 받아도 되나요?**



그룹홈의 후원금은 그룹홈 후원금 전용계좌로 받으시면 됩니다. 운영주체인 사회적협동조합과 그룹홈은 별도의 독립된 회계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만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의거). 사회적협동조합의 후원금을 그룹홈 예산에 편성하고 싶다면 법인전입금으로 편성하거나 조합에서 직접 집행하면 됩니다.



**35. 그룹홈 운영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든 건데
꼭 통장을 분리해야 하나요?**



모든 복지기관 및 시설은 재정 및 회계를 원칙적으로 분리·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기관의 자주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계를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운영주체인 법인에서 그룹홈 운영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전입금의 형태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룹홈의 자금을 법인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금지됩니다.



36. 후원금의 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현금으로 받는 후원금은 무조건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납부자에게 1부를 주고 1부는 보관하며 일련번호를 부여해 일정단위별로 편철하라고 하는데 우리 그룹홈에는 자체 영수증이 없습니다.



후원금(품)을 받을 때에는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 목록(대장)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3호의3,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제1항

기부자에게 후원신청서 등을 통해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연결되어 연말정산을 위한 후원금 영수증을 기부 당사자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별도의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익명기부를 통하여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7조2항」)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양식(예시)

연번	일시	후원자(법인)	후원금 유형 및 금액		지정후원금 용도	비고
			지정	비지정		
〈예시〉 1	〈예시〉 2013.1.25	〈예시〉 ○○○법인	〈예시〉 500,000		〈예시〉 아동급식지원	
2	2013.1.30	○○○		100,000원		

개인 기부금 영수증 양식(예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21. 3. 16.>

일련번호						기부금 영수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②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③ 기부금 모집처(연륜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④ 기부내용						
코 드	구 분 (금전 또는 현물)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작성 방법

1. ②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코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국가·지방자치단체), 나목(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10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102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산학협력단 등 각 목에 열거된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3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각 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4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105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116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	2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0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0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0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40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40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연구비·장학금)	40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나목(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40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0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4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	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노동조합 등의 회비)	42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공익단체)	42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	461

2.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④ 기부내용의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4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50

4. ④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현물기부"시 "단가"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

구 분	기부자		기부받는 공익법인
	법인	개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Max(장부가액, 시가)	Max(장부가액, 시가)	시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		장부가액*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개인의 최초 취득가액



법인 기부금 영수증 양식(예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21. 3. 16.>

일련번호						기부금 영수증	(앞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②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근거법령			
③ 기부금 모집처(연통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④ 기부내용							
코 드	구 분 (금전 또는 현물)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작성 방법

1. ②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코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국가·지방자치단체), 나목(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10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다목(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102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산학협력단 등 각 목에 열거된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3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각 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4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105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116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	2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0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0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0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40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40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연구비·장학금)	40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나목(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40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0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4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	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노동조합 등의 회비)	42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공익단체)	42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	461

2.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④ 기부내용의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4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50

4. ④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 만 적습니다."현물기부"시 "단가"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

구 분	기부자		기부받는 공익법인
	법인	개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Max(장부가액,시가)	Max(장부가액,시가)	시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		장부가액*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개인의 최초 취득가액

5.(유의사항)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 4제1항 및 제11조의2에 따른 전자기부금을 말함)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중복발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7. 후원금이 연초에 확정되지 않고 연내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발생하는 후원금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초에 후원금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면, 추경을 통해 연내에 반영하면 됩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연도에 수입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관련사업이 없어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음연도의 수입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38. 후원금과 후원물품 관리방법을 알려주세요!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뜻합니다.

후원금은 법인 명의 또는 그룹홈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각각 사용하여야 합니다. 모든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은 전용계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후원물품은 후원물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후원금과 후원물품 모두 법인과 그룹홈, 각각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그룹홈의 후원금 통장 명의를 구분하지 않고 그룹홈 명의로 법인 후원금품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39. 후원물품에 대해서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후원물품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후원물품에 대한 기증가액은 기증자로부터 받은 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작성할 수 있으며 그 외는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기증받은 물품의 제품명(모델명)과 동일한 물품으로 검색, 확인하여 물품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5

보조금 지원, 자가격리지원금 등 기타사항

Q & A

40. 지난 1년간 자부담으로 운영해 온 신규그룹هلل.

1년이 되는 시점에 진입평가를 받고 통과되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았는데 구청에서 7월이나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동복지사업안내에도 지자체 평가가 완료된 신규시설은 즉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수요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7월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근거를 알려주세요(구청으로부터 시청에서 안된다 했다고 답변받음).



A

신규그룹هل 지원시기는 연간 예산과 연관되어 있고, 구청 또는 시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릅니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에 질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답변내용

1. '2021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206쪽에 따르면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신규 국고보조 대상 시설 수요는 예산 편성 시기를 감안하여 매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의 시설 수요는 신규 지원 개시일인 **차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같은 지침 202쪽에 따라 최소 12개월 이상의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여 국고보조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2. 신규 지원 개시일은 효율적인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각 지방자치 단체의 국고보조 시설 선정 평가의 정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며, 지침 202쪽에 따른 **최소 12개월 이상의 실질적 운영 실적 요건은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국고보조 시설 선정 평가 대상이 되는 요건이지 그 자체로 국고보조 대상이 되는 요건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044-202-3437)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41. 그룹홈 아동 중 확진자가 발생하여 확진된 아이는 분리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외 아이들은 14일간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동안 보육교사들이 교대로 근무할 수 없어 원장이 2주간 아이들을 혼자 돌보았습니다.

격리해지 후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구청에서 아이들은 해당되지만 원장은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시간외 수당도 없이 고박 2주간 아이들을 돌보고 함께 자가격리를 했는데 원장은 왜 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A

자가격리지원금 지급대상의 기준은 구청이 아니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수립합니다.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문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생활지원비(자가격리지원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급되는 10만원의 생필품구입비와 다른 것입니다.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종사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단, 종사자의 경우, 유급휴가(공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반드시 유급휴가미 제공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라도 위의 사례처럼 자가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공가)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전체 운영비 중 지원받는 운영비의 금액이 적을 경우(그룹홈의 경우, 월 336천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운영비가 전체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가서 하거나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 양식

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

(※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에 한함)

사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원·격리기간 (본인 또는 가구원)	입원·격리시작일 202 년 월 일(요일)	입원·격리해제일 202 년 월 일(요일)

위 근로자에게 본인 또는 가구원의 입원·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나 감염병과 관련된
유급휴가(공가 등)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기관(업체)명 :

(직인)

210mm×297mm, 일반용지(60g/m², 재활용품)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회계컨설팅 Q & A

2021.12.